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제2조 (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서비스 시작일부터 인정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계약 만료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요양보호사의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6. 계약기간 중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제3조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또한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고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 1)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 2)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2026년도 기준 재가급여(복지용구제외)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2026년도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3.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7,450
가-2	60분 이상	25,320
가-3	90분 이상	34,120
가-4	120분 이상	43,430
가-5	150분 이상	50,640
가-6	180분 이상	57,020
가-7	210분 이상	63,530
가-8	240분 이상	70,080

(2026.01 기준)

※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 적용, 본인부담금 15% 적용

- ②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 ③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 ④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병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대상자의 보호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 조치 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의 본인 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상자의 본인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 ① 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의원 입원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④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 제공 의무
- ⑤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 표준수발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
- ③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입소비용 부담의무
-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5조 (급여비용 청구)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 2.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 3.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② 수급자의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④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 ⑤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⑧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